

(붙임 1)

「한국은행 경남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」 주요 개정내용

I 개정 필요성

- 한국은행 경남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에서 발급한 추천서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
-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점지원사업 개정 사항 반영

II 주요 개정내용

-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에서 발급한 추천서 보유 중소기업을 지역전략산 업영위기업(A8)으로 선정하여 지원
 - 증신용 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 종료*에 따라 지원대상 추천서 보유 기업을 C2로 이관하여 금융지원 지속
 - * 금융통화위원회의 「한국은행,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기한 1년 연장」 (2024.7.18.일 보도자료)
 - 경남지방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위기징후 (주의·심각) 대상으로 결정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
 -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중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추천서 보유 기업
-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에서 추천하는 경남지방 수출유망 중소기업*

- * ① 최근 3년 내 무역의 날 수출 탑 수상기업, ② 최근 2년간 연수출액 증감율의 평균이 양(+)인 기업, ③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 전환한 기업 중 추천서 작성일 기준 직전 또는 해당 연도 수출액이 미화 10,000불 이상인 기업 등

-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점지원사업 변경 내용을 일반지원부문에 반영
 - ‘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’ 및 ‘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’ 참여 기업을 연구개발 우수기업(A5)으로 선정하여 지원
 - 기존 수출관련기업(A10) 지원부문의 ‘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’은 폐지하고, ‘글로벌강소기업 1000+ 프로젝트’참여 기업을 수출관련기업으로 선정

Ⅲ 시행일

- 2024. 8. 1일 금융기관 대출취급분(2024.10월 한도배정)부터 적용
- 경과조치
 -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